

『한국문화기술』 심사 규정 및 투고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전공교수 및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재직자를 위주로 하며, 전공별로 적절히 안배한다. 단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총인원은 10명 내외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의 논문은 한 호에 2편 이상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자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고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집행한다.
6.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 책임 하에 대외비로 한다.
7. 판정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 심사결과 ‘게재가능’으로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 2) 심사결과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권고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A4 1쪽 분량 이상의 수정대조확인서를 제출받아 논문의 수정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 게재를 결정한다.
 - 3) 심사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그 논문의 게재 불가 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 4)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3인 심사위원이 동일하게 ‘수정후 게재’로 판정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5) ‘게재가능’과 ‘수정후 게재’의 판정에서 3인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후 게재’로 판정하고 위 2)항의 규정을 따른다.
 - 6) ‘게재가능’ 2와 ‘게재불가’ 1의 판정으로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위 2)항을, ‘게재’ 1과 ‘게재불가’ 2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위 3)항의 규정을 따른다.
 - 7) ‘수정후 게재’ 2와 ‘게재불가’ 1의 판정으로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위 3)항의 규정을 따른다.
8.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등의 판정 소견을 소정양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문화기술』 논문 투고 지침

1. 『한국문화기술』에 투고할 논문은 문화기술 및 문화기술연구와 한국문화에 관련된 연구 논문, 번역, 자료 등으로 한정한다.
2. 논문 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JAMS에 가입하고, 투고 단계에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다는 서명을 해야 가능하다.
3. 투고된 원고는 다른 간행물에 실리지 않은 것, 주요 내용이 이미 발표한 논문과 같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의 경우에는 제목, 대회명, 발표일자, 수록 쪽수 등을 투고 논문의 1쪽에 밝혀야 한다.
4. 논문은 논문집 발간일로부터 60일 전에 투고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단, 학회의 사정에 따라 투고 마감일이 조정될 수 있다.
5. 논문집 발간은 매년 2월 28일과 8월 31일로 한다.
6. 논문은 연구소에서 정한 ‘논문작성지침’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7. 투고된 논문은 3인 이내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의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8. 모든 원고는 ‘한글 2002’ 이상 버전의 프로그램에서 200자 원고지 기준 100장 안팎으로 하는 원칙으로 한다.
9.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자나 외국어 사용을 병행할 수 있다.
10.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국문화기술』 논문 작성 지침

1. 원고 작성

- 1)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한자 및 외국어를 표기할 때에는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을 투고할 때도 이 지침을 원칙으로 한다.

2. 저자 및 사사표시

- 1)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해서 표기하며, 공동 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명기한다.
(예) 허균(천하대학교 교수, 제1저자)·홍길동(천하대학교 연구원, 공동저자)
- 2) 논문 초고의 발표 사실을 밝혀야 할 경우에는 논문 제목에 각주를 달아 표기한다.
(예) 이 논문은 2000년도 3월 2일 천하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문예창작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3)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에는 지급 기관을 밝히며, 이 경우의 사사표시(acknowledgement)는 해당 기관의 양식에 따른다.

3. 체제

- 1) 투고논문의 체제는 ‘국문제목-영문제목-투고자 이름(소속 및 직위)-목차-국문요약-한글 주제어-본문 및 각주-참고문헌-영문초록(제목·이름 포함)-영문 주제어’의 순서를 따른다. 주제어는 5개 이상 제시한다.
- 2) 본문의 장, 절, 항, 목의 부호는 1-1)-(1)-(1)-①의 순서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논문에서 사용하는 기호체계는 다음을 따른다.
(1) 국내 논저의 경우 논문(학위논문 포함)·기사·작품명(시·단편소설·영화·드라마·연극 등등)은 「 」, 단행본·학술지·잡지는 『 』를 사용한다.
(2) 외국 논저의 경우, 논문은 “ ”, 단행본 및 학술지는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4. 인용

- 1) 인용부분은 “ ”로 표시하고, 필자의 의도에 따른 강조 부분은 ‘ ’ 부호를 사용한다.
- 2) 인용할 때 생략하고 싶은 부분은 (……) 부호로 표시하고, 필자가 특별히 추가한 부분은 [] 부호로 표시한다.
- 3) 외국어로 된 인용문은 되도록 한국어로 번역하여 본문에 쓰고, 원문을 명기할 때는 각주에 기재한다.
- 4) 인용된 자료의 저자 성명은 성(last name)과 이름 순으로 표기하고, 외국인 저자의 경우는 원어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이청준, 『서편제』, 열림원, 1998.
Foucault, M., 김부용 역, 『광기의 역사』, 인간사랑, 1999.
- 5) 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표의 번호와 제목을 달고, 그 출전을 표 위에 밝힌다.

5. 주(註)

- 1) 각주(脚註) 표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2) 각주의 경우에는 ‘한글’프로그램의 각주 기능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단행본의 표기는 “저자, 도서명, 출판사명,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순으로 하며, 본 작성지침의 기호체계에 따라 표시한다.
(예) 한국남, 『광복 이후의 한국문학사』, 평문사, 2001, 127쪽.
- 4) 번역서나 편저의 경우 “저자, 역자(편자),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순으로 하며, 본 작성지침의 기호체계를 지킨다.
(예) Frye, H. N., 이상우 역, 『문학의 구조와 상상력』, 집문당, 1987, 46쪽.
(예) Kristeva, J., 여홍상 편, 「말, 대화, 그리고 소설」, 『바흐친과 문학이론』, 문학과 지성사, 2000, 237~238쪽.
- 5) 논문 표기는 “필자, 「논문 제목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순으로 하며, 본 작성지침의 기호체계를 따른다. 또한 논문의 필자와 책의 저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자 이름을 따로 밝힌다. (영문 표기는 논문 제목은 『 』로 구분하고, 서명은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예) 이주영, 「친일문학 재논의」, 『재만조선인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2005, 136~162쪽.
(예) 박태일, 「장소시의 발견과 창작」, 김수복 편, 『한국문학 공간과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2005, 178~181쪽.
(예) Klaic, L, “The Theory of Drama”, Danaway, *The Plot of the Future-Utopia and Dystopia in Modern Drama*,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1, pp.7~9.
- 6) 학술지 게재논문을 표기할 때는 “필자, 「논문 제목」, 『게재지명』 권호수, 학회명,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순으로 한다.
(예) 박준규, 「북한의 교육현실과 남북한의 교육 이질화」, 『한국문예창작』 제4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3, 219~245쪽.
- 7) 학위논문을 표기할 때는 “저자, 「논문 제목」, 00대학교 대학원 00학위논문,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순으로 한다.
(예) 김정남, 「김승옥 소설의 근대성 담론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77쪽.
- 8) 학술지 게재논문 외 기타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자료인 경우 게재지와 발간 연호를 반점(.) 없이 이어 밝히고 발행처는 밝히지 않아도 좋다.
(예) 도명한, 「사람들 세상의 기쁨과 슬픔」, 『문학과 사상』 2008년 겨울호, 67~84쪽.
- 9) 여러 편 자료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행을 바꾸지 않고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예) 김동주, 「디지털 콘텐츠의 미적 양식」, 『콘텐츠와 문학』 제8호, 콘텐츠인문학회, 2005, 227쪽.; 강상대, 「디지털 스토리텔링 창작 연구」, 『한국문예창작』 제1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7, 35쪽.; 오진아, 「상처받은 영혼」, 『오늘의 문학』 2008년 6월호, 360~363쪽.
- 10) 저서명, 논문 제목 등은 반드시 원래의 제명(제목) 그대로 기재한다.
- 11) 저자의 수가 복수인 경우, 2인까지는 저자명을 모두 밝히고, 3인 이상의 경우는 대표저자 외 몇 인으로 표기한다.

- (예) 박진·김행숙, 『문학의 새로운 이해』, 청동거울, 2004, 171쪽.
- (예) 김중현 외 6인, 『대중문학의 이해』, 예림기획, 2005, 243쪽.
- 12) 웹사이트를 표기할 경우, URL 주소는 반드시 마지막 확장자까지 기록하고, ‘게시물 제목’과 방문일자를 부기한다.
- (예) White, Bebo. <Web Storytelling & Point Document Engineering>, http://www5conf.inria.fr/fich_html/slides/tutorials/T14/WWW6.html(2005.8.15)
- 13) 부득이하게 재인용이 필요할 경우 원저에 밝혀진 대로 서지사항을 최대한 정확히 표기한다. 이때는 재인용하고자 하는 원문의 “(원저자, 저서) 출처, 재인용”의 순으로 밝힌다.
- (예) (Bluestone, J., *Novels in to Film*, 1975, p.41.) 송희복, 『영상문학의 이해』, 두남, 2002, 47쪽. 재인용.
- 14) 바로 앞의 주에서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할 때 ‘위의 글’로 표기하고, 그보다 더 앞에서 인용한 논문 등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앞의 글’로 표기한다.

6. 참고문헌

- 1) 참고문헌은 논문의 본문 끝에 첨부하되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2) 참고문헌은 해당 논문에 인용하거나 논문 작성에 직접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 3) 참고문헌은 기본자료, 단행본, 논문의 순서로 작성하며, 한국, 중국, 일본, 기타 언어권의 순서로 정렬한다.
 - 4) 한국, 중국, 일본의 논저는 저자명 가나다 순, 다른 언어권은 저자명 알파벳 순으로 한다.
 - 5) 한 저자의 저작이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출판 연도 순으로 배열한다. 출판 연도가 같은 경우, 제목의 문자 가나다(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이때 저자명을 반복해서 적지 않고 일정한 길이의 밑줄(____)로 표기한다.
- (예) Freud, S., 김석희 역,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2.
 _____, 김재혁·권세훈 공역, 『꼬마 한스와 도라』, 열린책들, 2003.
 _____, 『예술, 문화, 정신분석』, 열린책들, 2003.
- 6) 논문의 필자와 책의 편·저자가 일치하지 않고, 여러 편의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명시할 경우에는 책 제목을 한 번만 밝히고, 개별 논문은 그 아래에 일정한 길이의 밑줄을 그어 서지를 밝힌 뒤 출처를 순서대로 명기한다.
- (예) 박덕규·이은정 편저, 『김춘수의 무의미시』, 푸른사상, 2012.
 _____, 권혁웅, 「무의미시는 무의미한 시가 아니다」, 201쪽.
 _____, 김승희, 「김춘수 시 새로 읽기—Abjection, 이미지, 상호텍스트성, 파쇄된 주체」, 59쪽.
- 7) 문헌정보의 기재는 각주 기재 순서와 표기양식을 따르되, 인용 논문의 경우 발표지에 해당 논문이 수록된 모든 쪽수를 반드시 명기한다.
- (예) 진은영, 「감각적인 것의 분배」, 『창작과 비평』 2008년 겨울호, 67~84쪽.
 (예) 김성렬, 「가족 소재 소설로 읽는 한국 근현대 소설의 과거·현재·미래」, 『한국문예창작』 제14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8, 171~199쪽.

7. 요약문 및 기타

- 1) 투고 논문에는 국문 요약문과 영문 초록(250~350단어 기준), 주제어(한글·영문, 5개 이상)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2) 투고 논문에 대한 그 밖의 지침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 관행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국문요약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되 800글자(공백 제외) 이상 A4 용지 한 장 이내로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하는 용어 5개 이상 10개 이내로 한다.
- 4) Abstract는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되 1600글자(공백 제외) 이상 A4 용지 한 장 이내로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하는 용어 5개 이상 10개 이내로 한다.